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6-152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 통지 공시송달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센터 미방문 하여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바,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6. 11. 16.

천 안 고 용 노 동 지 청 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인

1. 건　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(철회) 통지
2. 근　거: 가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」 제12조제4항 및 제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, 같은법 제29조제3항
   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, 같은법 제15조제3항, 같은법 제21조제1항
3. 공고대상자 및 내용

연번	수급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수급자격 인정일	주소	처분 내용	송달불능 사유
1	김*영	960330 -*******	2026.07.09	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31번길 20 ***호	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 불출석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향후 3년간 재참여 불가	- 첫 대면상담 후 연락두절 - 문자 발송 및 전화 미응답 (수회 시도) -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폐문부재로 반송

4. 공고기간: **2026. 11. 16. ~ 2026. 11. 30.**
   ※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. **<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: 2026. 12. 01.>**
5.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,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,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천안고용노동지청 아산고용센터 김소연(Tel. 041-570-555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